

증권담보용자 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신용거래용자 및 신용거래대주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
- 고객님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**반드시** 확인 ·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

■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- **증권담보용자**는 고객님의 유화증권과 약정을 맺고 그 약정금액만큼 고객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용자를 말합니다.
- “**주식담보용자**”란 주식을 담보로 하여 담보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자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“**매도자금담보용자**”란 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전자등록주식 등 또는 예탁증권을 담보로 금전의 용자를 하는 서비스입니다.
- **(임의처분(반대매매) 위험)** 담보증권 가치가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는 임의 처분(반대매매)에 따른 손실 위험
- ※ <은행등 신용대출과의 차이> 은행 등 신용대출은 무담보대출로써 채권회수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반면,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거래는 담보유지비율 하락시 등에 반대매매를 통해 즉각 채권이 회수됩니다. 또한 신용거래 이자율은 은행 신용대출에 비해 높을 수 있으며, 기간별로 차등 적용되므로 **신용거래를 이용한 투자 시 예상 이자비용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**가 있습니다.

■ 발생가능한 불이익 등

□ 발생가능한 불이익

- 증권담보용자금에 대한 **담보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(170%)이상** 이어야 하며, 이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추가담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- **담보유지비율 미달 등 담보의 추가납부 사유가 발생**하여 회사가 요구한 기일까지 추가로 담보를 납부하지 않으면 **상환기일 전이라도 필요한 수량만큼 회사가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**할 수 있습니다.
- 연체 시 대출 원금에 대한 **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
- **만기 미상환 시 담보 증권이 임의처분**되며, 임의처분으로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**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

■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

☆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신용도 하락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만기 미상환 시 **담보증권이 임의처분** 되며, **임의처분으로** 모든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**연체금액이 잔존할 경우 연체이자 납부 및 이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*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☆ 담보유지비율 하회 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- <예시> 보유주식 1,000주, 전일종가 10,000원, 대출금 500만원, 담보유지비율 170%인 계좌의 주가 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(170%)을 하회하여 임의처분이 실행될 경우

※ 반대매매 절차

(D일) 담보유지비율 하회사실 발생 및 추가담보납부 요구, 추가담보 납입 기한일이나 추가담보 미납 발생 → (D+1) 반대매매 실행

날짜	주식가격	계좌평가금액	담보평가비율*	비고
신용거래 매수	10,000원	10,000,000원	200%	-
D일	8,300원	8,300,000원	166%	담보유지비율 하회 및 추가담보 납부요구 추가담보 미납
D+1일	반대매매 실행 * 반대매매 수량 = $\frac{(5,000,000\text{원} \times 1.7) - 8,300\text{원} \times 1,000\text{주}}{5,810\text{원} \times 1.7 - 8,300\text{원}} = 127$ ☞ 반대매매 수량 산식은 본문 중 1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 중 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		

* 담보평가비율 = 계좌평가금액/용자금

☞ (반대매매가를 전일 종가의 하한가로 정한 경우) 전일종가(8,300원) 대비 30% 하락한 가격(하한가, 5,810원)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, 127주 반대매매 필요

→ 반대매매가 7,000원에 체결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임의처분금액은 88.9만원(127주 × 7,000원)으로 **담보부족금액(20만원)의 4.4배 수준**

■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-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유화증권 상담센터(02-566-5522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yhs.co.kr)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.
-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<http://www.fcsc.kr>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1 상품개요 및 특성

가. 증권담보대출 개념

- ① 일반담보대출 : 고객이 예탁증권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**위탁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**받는 것
- ② 매도담보대출 : 고객이 **위탁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증권을 매도**한 경우 **매도한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**받는 것

※ 동일 계좌 내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대출을 동시에 유지할 수 없으며 체결기준으로 한유형의 담보대출 상환이 완료된 시점에 다른 유형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나. 대상 고객

- 개인 (채무불이행자, 성년후견/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고객, 미성년자, 법인 등 불가)
- 법인

다. 담보대출 가능 대상 종목

- 당사가 받는 담보는 고객의 증권계좌에 예탁된 증권으로 합니다. **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탁증권은 담보로 받지 아니 합니다.**
 - 한국거래소가 **투자경고종목,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**으로 지정한 증권
 - 한국거래소가 **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**(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)를 취한 증권
 - 한국거래소가 **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거래를 정지**시킨 증권
 - 비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
 - 「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연도 **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법인**이 발행한 주권
 -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**투자적격등급미만의 판정을 받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증권 발행법인**이 발행한 주권
 - **비상장채권**(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으로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 - 신용평가업자로부터 **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채권**
 - **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** 집합투자증권 및 신탁수익증권
 - 주식워런트증권
 -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
 -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**의무보호예수** 중인 증권
 - 증권시장 상장주권 중 **위탁증거금을 100% 받는 종목**

라. 담보융자비용

구 분	융자비용
일반담보대출	담보가액의 50%
매도담보대출	매도대금의 98%

마. 담보대출 용자 한도

- 동일인당 최대 약정금액은 **개인의 경우 5억원, 법인의 경우 10억원**입니다. 다만, 회사에서 정한 **별도 기준에 의거 최대약정금액 한도를 초과**할 수 있습니다.
-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,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의 총액의 비율이 **200% 이상**이어야 합니다.

바. 담보유지비율

- ☑ **담보유지비율** : 170 % (전 종목군에 해당)
- 담보유지비율(170%) 미달 시 회사는 담보의 추가납입을 요구합니다. **담보유지비율 미달 및 반대매매 대상 금액 산출 기준은 '계좌 담보유지비율'로 산정**됩니다.

사. 용자 기간

- ☑ **예탁증권담보대출** : 180 일 (**90일 연장 2회** 가능)

아. 담보유지비율 하회 시 추가담보 제공 기간

170% 미만	추가담보요구일로부터 1영업일 이내 ※ 추가담보납부기간동안 납입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반대매매를 통한 임의상환정리 진행
---------	---

자. 이자율 및 징수일 등

- ☑ **이자율 적용기준**

구분		1~7일 이내	8~15일 이내	16~30일 이내	31~90일 이내	91~150일 이내
일반 담보대출	이자율	7.6%	7.6%	7.6%	7.6%	7.6%
	연체이자율	연체 당시 약정이자율 +3%				
매도 담보대출	이자율	10.0%				
	연체이자율	연체 당시 약정이자율 +3%				

※ 종목별 차등금리 적용 및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금리 적용 가능

- ☑ **이자 징수일**

- 정기 : 매월 첫 영업일
- 수시 : 상환일

- ☑ **이자율 적용방식**

- **[단일법]**으로 이용기간과 상관없이 단일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

<예시> 대출금 1천만원, 대출기간 50일(7/10~8/29)인 경우

계산방식	이자징수일	이자금액(원)	계산식	총이자(원)
단일법	08/01 (정기이자)	37,397	$10,000,000 \times 6.5\% \times 21/365$	89,040
	08/29 (상환이자)	51,643	$10,000,000 \times 6.5\% \times 29/365$	

2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

- ☑ 주식담보용자는 **취급 보수 등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.**
- ☑ 이자 외 발생비용은 담보주식 매매에 따른 **매매수수료**와 **제세금**으로 **유화증권의 매매수수료 정책**을 적용합니다.

3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

- ☑ 상환기일 이전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이 가능하며, **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.**
 - ☑ **매도상환, 현금상환 가능**
 - **(매도상환)** 담보대출 질권 설정 종목을 매도하여 상환
 - **(현금상환)** 용자금을 현금으로 상환
 - ☑ **상환매체** :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상으로 주문·신청 가능
 - ☑ **상환처리일** : **매매**에 의하여 상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**상환하고자 하는 날의 전전일(휴장일 제외)에 회사에 신청하여 동 매매의 결제일에 상환**. 현금에 의한 상환은 **상환 신청(오후 4시까지)한 당일 상환됨**
 - ☑ **상환방법** : 수량기준 상환 또는 금액기준 상환 가능
- ※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을 경우 **연체이자 발생 및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

4 담보의 징구 및 반대매매 등 관한 사항

- **(담보의 징구)** 일반담보대출의 경우 회사는 **고객이 제공한 담보증권에 질권**(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)을 설정합니다. **매도담보대출**의 경우 회사는 **해당 매도증권에 질권을 설정**합니다.
- **(담보증권 평가)** **당일 종가**(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최근일 기준가격)로 평가합니다. 다만 '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'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합니다.
 - ※ 당일 종가로 평가하지 않기로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담보증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.
- **(반대매매 발생 사유 등)** 회사는 다음의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①**고객계좌 예탁 현금** → ②**담보증권** → ③**그 밖의 고객의 증권**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임의처분하여 **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.**
 - √ **신용거래 상환 요구를 받고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않는 경우**
 - √ **담보유지비율 하회로 추가담보 납입요구를 받았으나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**
 - √ **매매수수료,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그 납입기일 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**
 - ※ 다만,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.
- **(반대매매 수량 산정 방식)** 반대매매 수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결정됩니다.

$$\bullet \text{ 반대매매 수량} = \frac{(\text{신용공여잔고} \times \text{담보유지비율}) - \text{기준가격(전일종가)} \times \text{보유수량}}{(\text{매도가격} \times \text{담보유지비율}) - \text{기준가격(전일종가)}}$$

* **매도가격** : 전일 종가 대비 30% 할인된 가격

※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은 별도 고려하여 산정함

- **(통지방법)** **추가담보 납입요구는 유선통보가 우선이며**, 유선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내용증명우편, SMS, E-mail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.

※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했을 시,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**담보 추가납입 요구 및 징구 없이 반대매매할 수 있습니다.**

☞ 이 경우 회사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,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합니다.

- (채무 총당 순서) 반대매매를 통한 매각대금은 ①처분제비용 → ②연체이자 → ③이자 → ④채무원금 순으로 총당됩니다. 다만,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채무 총당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5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

가. 연체이자 부담

- 반대매매 후 최종 미납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변제전까지 매일 연체이자율에 따라 연체료가 가산됩니다.
- 연체이자율은 적용 이자율 + 연체가산이자율로 구성되며 연 [약정이자율 +3%]%를 적용합니다.
-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

✓ 「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

- 용자이자금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징수됩니다

✓ 「용자금/대주수량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」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

- 만기일의 익익영업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미상환용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.

나. 그 밖의 불이익

- 대출 원리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며,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타 금융기관에 동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점수하락 및 신용거래 만기 연장 불가, 금리 상승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연체정보가 등록된 이후 원리금을 상환하여도 신용점수가 상당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6 용자기간 및 연장사항

- ☑ 증권담보대출 : 180 일 (90일 연장 2회 가능)
-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
 -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, 증권담보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 - 연장시점에 최소담보유지비율 이상 계좌이고, 해당 종목이 담보대출 가능 종목인 경우에만 고객의 별도 신청(유선, 영업점 내방)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.

7 증권담보용자거래가 신용에 미치는 영향

-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도 하락시 신용거래, 증권담보용자거래 등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.

8 증권담보용자거래의 유의사항

- 증권담보용자거래 시 대출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<사례1> 주식의 상하한가 폭은 각각 30%이며, 대출비율 50%인 경우 1,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초담보비율은 200%(=1,000÷500×100)임

→ 2일 연속 하한가로 마칠 경우 그 손실액은 용자금(500만원)을 상회하게 됨

- 담보증권의 가격의 변동으로 최소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담보의 납입을 이행하여야 하나 미이행 시 **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을 부담합니다.**
- 증권담보대출거래계좌의 **담보유지비율이 일정비율을 하회할 경우 고객 계좌내의 현금 및 증권의 출고 및 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**
- 회사는 **증권담보대출거래 상환기일이 경과된 증권담보용자가 있는 고객**은 증권담보용자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**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**합니다.

※ 증권담보용자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예시된 사항이 증권담보용자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, 증권담보용자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하신 후 동 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9 금융소비자의 권리

가. 청약철회권

- 일반금융소비자는 ① **계약체결일**, ② **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**(회사와 고객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) **내에**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(다만, **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불가능**합니다.)
-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고객센터(02-566-5522) 유선접수 방법으로 **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**를 해야 하며, 이미 수령한 금전 등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※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,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연체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
나. 위법계약해지권

- 금융회사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**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.**
 -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(법 제17조제3항 위반)
 - 대출상품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(법 제18조제2항 위반)
 -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(법 제19조제1항·제3항 위반)
 -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(법 제20조제1항 위반)
 -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(법 제21조 위반)
- ※ 위법계약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므로, 해지 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.
-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**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**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.

-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**해지를 요구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통지**하여야 하며, 거절할 때에는 **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**하여야 합니다.

다. 자료열람요구권

-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(사본 및 청취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 -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,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,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,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,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,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-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 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.
- 회사는 법령, 제3자의 이익 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10 기타 유의사항

- **약관·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**
 - 회사는 필요한 경우 **증권담보융자 이자율, 연체이자율, 융자비율, 담보유지비율, 추가담보납부기간 등을 변경**할 수 있습니다.
 - 회사는 **증권담보융자거래약관을 변경**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, 홈페이지, HTS 등에 게시합니다.
 - 약관의 **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**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.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**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**
- ※ 다만, 관계법규 제·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,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11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

※ 아래 주요내용을 **차필**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

증권담보융자거래 시 **대출금을 초과하여 손실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?

⇒ ① 예 / ② 아니오

②

증권담보융자금 미상환시, 최소담보유지비율 미달에 따른 추가 금액 미납 시 등의 경우 **반대매매**가 일어나며, **단기간에 주식가치가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인해 대출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**할 수 있습니다.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?

⇒ ① 예 / ② 아니오

③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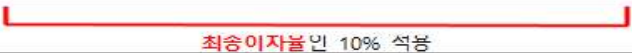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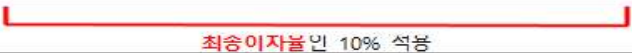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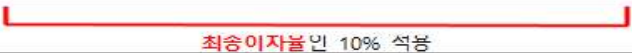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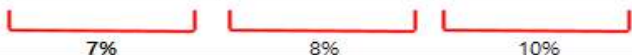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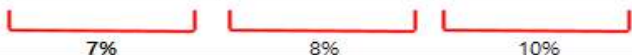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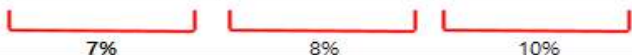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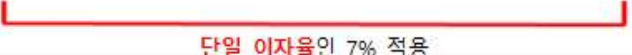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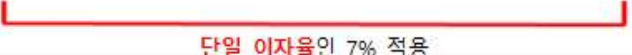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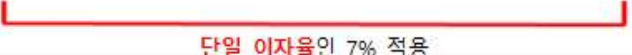
연체 시 **연체이자**가 발생되며, **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신규·만기연장 불가 등 불이익*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확인하셨습니까?

⇒ ① 예 / ② 아니오

→ 본인은 유화증권 주식회사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용거래의 [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]에 대하여 [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]을 확인합니다.

→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[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]에 대하여 [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]을 확인합니다.

※ [부록]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

용어	설명																		
담보유지비율	신용거래시 용자로 매수한 주식 또는 대주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이나 신용 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인한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 기 위하여 당해 신용거래 용자액 또는 신용거래 대주시가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																		
대용증권	매매주문 시 위탁증거금, 신용거래보증금 및 기타 보증금을 거래소에 납입할 때 거래소가 정한 비율 이내에서 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유가증권																		
반대매매	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상환기한 이전에 용자분은 매도, 대주분은 매수하 여 차금을 수수함으로써 청산하는 행위																		
소급법	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,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의 보유 기간에 따른 최종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<예시> <table><tr><td>~7일까지</td><td>7%</td><td>~30일까지</td><td>8%</td><td>~90일까지</td><td>10%</td></tr><tr><td>이자기산일 (9.4)</td><td>7일 경과 (9.11)</td><td>30일 경과 (10.3)</td><td>50일 경과 (10.24)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<tr><td colspan="5"></td><td>총 이자 = 684,932원</td></tr></table>	~7일까지	7%	~30일까지	8%	~90일까지	10%	이자기산일 (9.4)	7일 경과 (9.11)	30일 경과 (10.3)	50일 경과 (10.24)								총 이자 = 684,932원
~7일까지	7%	~30일까지	8%	~90일까지	10%														
이자기산일 (9.4)	7일 경과 (9.11)	30일 경과 (10.3)	50일 경과 (10.24)																
					총 이자 = 684,932원														
체차법	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, 신용매수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의 보유 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합산하는 방식 <예시> <table><tr><td>이자기산일 (9.4)</td><td>7일 경과 (9.11)</td><td>30일 경과 (10.3)</td><td>50일 경과 (10.24)</td><td></td></tr><tr><td colspan="4"></td><td>총 이자 = 593,151원</td></tr></table>	이자기산일 (9.4)	7일 경과 (9.11)	30일 경과 (10.3)	50일 경과 (10.24)						총 이자 = 593,151원								
이자기산일 (9.4)	7일 경과 (9.11)	30일 경과 (10.3)	50일 경과 (10.24)																
				총 이자 = 593,151원															
단일법	신용거래용자 이자율 산정방식의 하나로, 신용이용 기간과 상관없이 단일 이자율 을 적용하는 방식 <예시> <table><tr><td>이자기산일 (9.4)</td><td>7일 경과 (9.11)</td><td>30일 경과 (10.3)</td><td>50일 경과 (10.24)</td><td></td></tr><tr><td colspan="4"></td><td>총 이자 = 479,452원</td></tr></table>	이자기산일 (9.4)	7일 경과 (9.11)	30일 경과 (10.3)	50일 경과 (10.24)						총 이자 = 479,452원								
이자기산일 (9.4)	7일 경과 (9.11)	30일 경과 (10.3)	50일 경과 (10.24)																
				총 이자 = 479,452원															
공매도	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 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																		
유통대주	증권회사가 매도주식을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대여하여 고객에게 재대여 한 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. 매도자는 매도대금 및 신용거래 보증금을 신용대주 의 담보로 예탁시켜야 하며 일정기간 내에 당해 주식을 상환해야 함																		

※ 소급법, 체차법, 단일법에 대한 각각 예시의 총이자선 신용거래금액 5천만원, 대출기간 5일(9.4~10.24)을 가정하여 산출함